KOSHA GUIDE C - 70 - 2012

- (9) 보호구, 응급구조체계, 구조장비, 통신장비 구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, 작업장에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외부와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(11) 화재 발생시 인근지역의 119 또는 응급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고 응급처치 및 후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또한 응급기관이 도착하였을 때 신속 한 구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폐공간의 특정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(12) 구조자는 공기호흡기, 구명줄 등 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응급장비(인공호흡기, 인공호흡 마스크 등)을 지참하여야 한다. 응급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는 KOSHA GUIDE H-59-2012(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시행 지침)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(13) 응급처치 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-57-2012(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)과 KOSHA GUIDE H-59-2012(현장 인공호흡및 심폐소생술 시행 지침)을 따른다. 또한 밀폐공간에서의 구조방법은 KOSHA GUIDE X-25-2012(밀폐공간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계획 수립지침)을 참조한다.

10. 사전 피해예방 대책 수립

- (1) 냉동·냉장 물류창고와 같은 밀폐공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피해를 고려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2차 사고를 제어하여야 한다.
- (2) 시공자는 피해범위의 명확한 파악을 위하여 KOSHA GUIDE P-102-2012 (사고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)을 토대로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거리와 확산범위를 도면상에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
- (3) 피해범위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면 실제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화재사고에 대한 진압 전략 등과 같은 대응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. 화재에 대한 대책 수립 시 초기화재, 화재의 성장, 화재의 쇠퇴, 화재의 종료와 같이 일련의 진행순서를 고려하여야 한다.